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2. 조치일 : 2020. 2. 21.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 업무 운영 불합리

① 금융거래시 당해 거래고객에 대해 요주의 인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본인 이외에 대리인, 실제소유자, 법인·단체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 대사하는 절차가 전산시스템에 선택항목으로 반영되어 있어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리인, 실제소유자, 법인·단체의 대표자 정보에 대하여도 요주의 인물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토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② 요주의 인물 관리 전산시스템 필터링을 통해 동일 성명이 적출되었으나 동명이인 등 요주의 인물이 아닌 것으로 영업점에서 판단한 경우 그 판단 사유를 기재하고 업무팀장의 승인을 받아 금융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판단 근거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비하여 영업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에 대한 고위경영진의 승인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점의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결과에 대한 본점 자금세탁방지 담당부서의 정기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관련 업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③ FATF 지정 위험국가 신규 추가시 기존 고객에 대해서 고객확인 재이행 전까지는 FATF 신규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해당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강화 등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도래 이전이더라도 FATF 지정 위험국가로 추가된 국적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국가 위험도가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④ 관련 내규 등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있으나,

계좌개설대리인 등 대리인의 고객확인 정보를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고객위험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는 등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 운영이 미흡하므로,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정보의 전산 입력 및 고객위험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업무 운영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고객 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고객의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을 반영한 고객 위험평가모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 고객의 경우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고객 및 상품·서비스 유형만 고위험으로 분류되고, 고객위험평가모형에 따른 위험평가결과로는 고위험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평가모형이 설계되어 있어 고객 위험평가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신규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비하는 등 고객 위험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